|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
|------------|-------|-----|-------------------------------------|
| 안          | 건 번   | 호   | 제2025-204-79호(사건번호 : )              |
| 안          | 건     | 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 피          | 심     | 인   | 인천미추홀경찰서 (고유번호 : )<br>대표자           |
| 의 2        | 결 연 월 | 일 일 | 2025. 2. 26.                        |
| <b>д</b> п |       |     |                                     |

## 주 문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아니한 피 심인의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 이 유

피심인은 '22. 7. 7. 고발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수사 관련 서류를 조사실책상 위에 둔 채 자리를 비움으로써 고발인의 개인정보( )를 유출하였으며, '22. 8. 6. 고발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보주체에게「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적법한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舊「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제75조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3-9호) 제21조에 따라 경고 처분한다.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2025년 2월 26일

위원장 이문한 (서명)

위 원 박상희 (서명)

위 원 윤영미 (서명)